

【 3 】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9. 28

제 출 자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양주군 청사의 관내 이전으로 군청 소재지인 주내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주읍의 관할구역을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만송리, 삼송리, 고읍리등 9개 법정리로 정함(안 제2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1조(설치) 양주군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양주군 양주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 명	읍 의 명 칭	관 할 구 역
양 주 군	양 주 읍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만송리, 삼송리, 고읍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2중 만송리 보건진료소 위치란의 “주내면”을 “양주읍”으로하고, 별표3중 명칭, 위치, 관할구역란의 “주내면”을 “양주읍”으로한다.

②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기관명란의 “주내면사무소”를“양주읍사무소”로하고, 소재지란중 “주내면”을“양주읍”으로 한다.

③양주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명칭란의 “주내복지회관”을“양주복지회관”으로 하고, 소재지란의 “주내면”을“양주읍”으로 한다.

④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중 명칭란의 “주내묘지”를“양주묘지”로하고 위치란중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한다.

⑤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서식중 읍면명란의 “주내면”을“양주읍”으로 한다.

⑥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주내면”을“양주읍”으로 한다.

⑦양주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중 읍면별란의 “주내면”을“양주읍”으로 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團體의 條例로 정하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改正 94·12·20, 99·8·31>

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7條 (市·邑의 設置基準等)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改正 95·8·4>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
3.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

④削除 <99·8·31>

⑤市·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8>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
 -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運營·管理
 - 다. 傘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
 - 라. 傘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94·7·6, 95·7·1>

제 7 조 (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4·1,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②법 제 7 조제 2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0·19, 99·12·31>

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div 일반회계예산] \times 100$$

③법 제 7 조제 3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4·7·6, 99·12·31>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이상일 것

제 8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추 117)

양 주 군

우 480-011 의정부시·의정부1동 220-66 / ☎ 031-820-2112 / 2113 전송 820-2118
담당부서 총무과 과장 윤광노 행정담당 관홍길 담당자 최상기

문서번호 총무 13120 -122/
시행일자 2000. 8. 16 (준영구)
경유
수신 경기도지사
참조 자치행정과장

보존기간	3년	군수
공개여부	공개	
부군수	홍길	관홍길
과장	광노	●행정담당 : 관홍길
기안	★관홍길	협조
심사자	관홍길	심사일 8/16

제목 주내면 읍 승격 및 명칭변경 승인요청

- 경기자치 13060-10960 (2000. 7.15)호와 관련입니다.
- 우리군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른 읍 승격 및 명칭변경 실태조사서를 붙임과 같이 보완 제출하오니 주내면이 군청이전과 동시에 읍으로 승격은 물론 명칭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주내면 실태조사서 1부.
2. 명칭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 1부. 끝.

양 주 군 수

수신처 :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주 내 면 실태조사서

경기도지사 임 창 열 (인)

양주군수 윤 명 노



주내면장 조 호 연



경 기 도

3. 읍 설 치

가. 읍 명 칭 : 양 주 읍

나. 사 유

○ 지역개발면

주내면은 국도3호선인 평화로 및 경원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된 지역으로 인근 의정부시와 인접하여 있는 한편 경원선전철 복선화 사업 및 평화로 우회도로 공사, 복지~마천 간, 덕계~고읍 간, 금오~광사간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통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청소재 지역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편 계속되는 아파트 신축 등에 의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이에 부응한 사회·문화·도시 등 포괄적인 지역개발이 착실하게 추진 될 수 있음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으로 도·농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행정수요면

도시기반의 확충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각종 민원, 복지, 문화 분야 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지역개발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행정기구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함.

특히, 유입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들트써 농촌 형태의 지역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욕구 충족 요구에 따른 행정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기구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한 여건

주내면 지역은 의정부시와 연결되는 경기북부 지역의 관문 지역이나 전 지역의 65.2%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 및 지역 개발에 지장을 받아 왔으며, 유양리 714번지 일대가 음성나환자 정착마을이 있으며 또한 마을 내에 170여 개의 무등록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국가무형 문화제 2호로 지정된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 동헌, 원골문화마을조성, 불곡산 등산로 등으로 문화와 전통이 어울어진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임

다. 관할구역

명 칭	관 할 구 역
양 주 읍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단송리, 삼송리, 고읍리

라. 기구 및 정원

- 기 구 : 3 담당 → 4 담당 (총무, 사회, 산업, 주민)
- 인 력 : 21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기 타	비 고
소요인력	21	1	4	6	5	4	1	2	
기 존	16	1	3	4	3	4	1	2	
증 원	5		1	2	2				

마. 청사 활용계획

구 분	소 요	현 재	대 책
계			현청사 사용 및
대 지 (평)	906	877	필요시 창고개축
건 물 (평)	302	289	

바. 소요예산 및 확보대책

○ 소요예산

계	인건비	청사비	차량비	시설·경상비	기타
975,994	525,016	40,000		359,008	51,970

○ 확보대책

- 2000년 추가경정예산 및 2001년 본 예산 확보

4. 지역여건

가. 주민의견

양주군 청사가 의정부로 이전(1922)한지 78년이란 세월이 흘러 금년 10월 군민의 숙원이었던 군청 청사가 주내면 관내로 이전되면 주내면은 양주군의 수부 도시로 형성될은 물론 양주의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화가 될 것임

이에 조선조부터 유양리 일원을 양주 읍내라 불렀던 전통을 재현하고 역사의 고장, 양주군의 군청 소재지로서의 지역 대표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읍 명칭을 양주 읍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주민 다수가 찬성 건의하는 상황임

나. 지방의회 의견 : " 별 지 "

다. 종합의견 : " 별 지 "

읍승격 관련 종합의견

- 우리군 주내면은 국도3호선 평화로와 경원선 철도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관통하고 있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증추적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써 의정부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65.2%), 군사시설보호구역(19.6%)등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개발이 침체되어 온 지역임.
- 그러나 최근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과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북지~마전 간, 덕계~고읍 간, 금오~광사 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최근 아파트 신축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교 수련원, MBC 문화동산,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 등의 소재 등으로 인한 인구의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사회, 문화, 도시 등 포괄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역사적으로 1506년 (조선조 중종1년) ~ 1922년까지 「양주」의 치소가 있던 지역(고읍리, 유양리)으로 1922년 군청과 경찰서가 의정부로 이전되기 전까지 양주군 행정의 중심지역 이었고 의정부가 1964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이후 군청사가 의정부시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에 제약이 많았으나 78년 만인 금년 10월 군청사가 주내면 남방리로 이전함에 따라 옛 양주의 영화를 되찾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황임.
- 특히 주내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군사무소가 있는 소재지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금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의 신청사가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서 주내면 남방리 산1번지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주내면 지역이 읍으로 승격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점을 근거로 주내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된 것으로 믿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군청사 이전을 계기로 현재의 주내라는 명칭을 양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우리군은 주내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군청 소재지역으로서의 지역개발 뿐 단 아니라 향후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도권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역발전 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내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함

양 주 군 수 윤 명 노 

주내면 읍승격에 따른 의견서

□ 주내면의 연혁을 살펴보면

- 주내면은 조선조 광조가 개창되고 1394년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지자 다음해인 1395년(태조4)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건주로 옮기고 건주를 양주로 개칭 하였으며 치소(治所)를 현재의 주내면 고음리에 두었으며
- 조선조 중종1년(1505년) 양주 치소를 현 주내면 유양리로 옮긴 이후 주내면은 1922년까지 417년동안 양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역사의 고장으로 조선조말까지는 양주읍으로 칭하였습니다.
- 행정구역 변경은 1914년 읍내면 등부리, 남방리, 산북리, 마전리, 어둔리 전부와 고주내면 광암리, 삼사동, 고음리 일부, 천천면 도덕리, 고장리 일부를 통폐합하여 9개리로 하고 면사무소를 유양리에 설치하였으며
- 그후 1955년 면사무소를 남방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 주내면의 여건은 통일의 길목인 국도3호선인 평화로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등 교통이 잘 발달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지역입니다.
-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의 전원 거주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층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평화로 우회도로,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98년 대비 99년 인구 증가율은 20%나 평균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0년 10월 1일 양주군 청사가 주내면 남방리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읍으로의 승격을 통하여 체계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한편 이시점에서 주내면 주민들은 주내면의 승격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 승격을 계기로 양주읍으로의 옛 명칭을 찾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대가 지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등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되찾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전국제일의 용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주군의회는 전군민과 함께 양주읍으로의 승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0년 7월 6일

양 주 군 의 회 의



1.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발췌)

<p>지방자치법 (1949.7.4 법률 제32호)</p>	<p>지방자치법시행령 (1949.8.13 대통령령 제158호)</p>
<p>第3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p> <p>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域市の 管轄區域안에 둔다. <改正 94.12.20></p> <p>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만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包含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 <改正 94.12.20></p> <p>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郡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新設 94.3.16, 改正 94.12.20></p> <p>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從前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設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地方自治法 (1949.7.4 法律 第32號)</p>	<p>지방자치법시행령 (1949.8.13 대통령령 제158호)</p>
<p>①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關係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다만, 第1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但書新設 '99. 8. 31></p>	<p>제 2 조(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p>
<p>②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區域變更은 特別市長·廣城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但書新設 '99. 8. 31></p>	<p>제 3 조(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里의 區域은 自然的 村落을 基準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증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p>	<p>제 4 조(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④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 이상의 洞·里로 운명하거나 2개 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 운영상</p>	<p>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p>

<p>地方自治法 (1949.7.4 法律 第32號)</p>	<p>지방자치법시행령 (1949.8.13 대통령령 제158호)</p>
<p>洞·里(“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p> <p>第5項의 (行政 洞·里에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外에 依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p> <p>第5條(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時에 是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p> <p>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關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가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指定한다. <改正 '99.8.31></p> <p>第6條(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畵·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依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과 미리 協議를 거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를 거친</p>	<p>제5조(폐치·분함으로써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①폐치·분함으로써 인하여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소멸한 날로써 마감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p>

<p>地方自治法 (1949.7.4 法律 第32號)</p>	<p>지방자치법시행령 (1949.8.13 대통령령 제158호)</p>
<p>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 며, 自治區가 아닌 區와 縣·市·洞 에 있어서는 그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 洞을 말한다.</p> <p>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p> <p>第7條(市·邑의 設置基準등) ①市는 그 대부분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 다. <改正 95.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 와 郡을 統合한 地域 2. 人口 5만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지역이 있는 郡 3. 人口 2만 이상의 都市형태를 갖춘2 개이상의 지역의 人口가 5만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만이상 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 체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 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p>地方自治法 (1949.7.4 法律 第32號)</p>	<p>지방자치법 시행령 (1949.8.13 대통령령 제158호)</p>
<p>③본은 그 대부분이 郡市의 형태를 갖추고 人口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촌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만 미만인 경우에도 郡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 2. 邑이 없는 郡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개面 <p>④삭제 (99.8.31)</p> <p>⑤市·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의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p> <p>공법 제7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5.10.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p>$\frac{[(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div \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p> <p>③법 제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邑設置承認書

행정자치부 제2000 - 114호

읍 설 치 승 인 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읍설치를 승인합니다.

2000년 9월 22일

행 정 자 치 부



승인내용 :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설치

읍설치내역

시도·시군구	신설읍의 명칭	관할구역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楊州區)	종전 양주군 주내면 일원

시행일 : 자치단체 조례시행일

地方公務員 定員承認書

정원 승인서

<경기도>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인 원	비 고	
양주군	주내면	면장 담당	행·농 5급	△ 1	폐지
			6급	△ 3	
			7급이하 기능직	△ 11	
				△ 1	
	소 계		△ 16		
양주읍	읍장 담당	행·농 5급		1	※과제 미실시
			6급	3	
			7급이하 기능직	11	
				1	
	소 계		16		
합	계		0		

※ 정원시행일 : 주례시행일

- 이 하 여 백 -

邑設置 及 管轄區域變更 條例案

○○군조례 제 호

○○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설치) ○○군 ○○면을 ○읍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군 ○○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한다.

읍 의 명 칭	관 할 구 역
○ ○ 읍	○○면, ○○면, ○○면, ○○면

부 칙

이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邑設置關聯 行政事項(指針)

邑設置關聯 行政事項

업 무 명	주 요 조 치 사 항
① 기구 및 정원조정	○ 기구, 직원은 원채제를 유지함
② 청사 및 장비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사 : 신청사 ○ 사무장비 : 장비는 보수 활용하되, 신규로 필요한 것만 구입 ○ 예 산 : 개청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기존예산에서 충당하고 추경조치
③ 자치법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대상 : 읍설치와 관련하여 정비해야 하는 일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 시행 10일전까지 정비공포
④ 각종 공부 및 대장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대상 : 읍설치와 관련하여 정비해야 하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 병적 등 각종 대상공부 일체 ○ 정비요령 : 관계법규에 의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관계공부 : 주민등록정비요령에 의거 정비 · 호적관계공부 : 호적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정비 · 지적관계공부 : 지적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정비

업 무 명	주 요 조 치 사 항
	<p>※ 각종 공무는 정비사업비를 편성, 군·읍간 유기적 체계를 통해 업무 추진에 기장이 없도록 추진</p> <p>· 특별기법과서의 법원등이 관장하는 공무에 대하여는 당해 과서에 통보하여 설리요청(토기·건물등기부·혼적 등)</p> <p>○ 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토기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정비협소 요청</p> <p>○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조각하여 흑색잉 크로 정정란에 날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예></p> <p>○○○○년 월 일 ○○군 조례 제 호로 ○○읍 설치(인)</p> </div> <p>※ 규격은 공무 및 대장의 규격에 따라 결정</p> <p>○ 군에서는 공부정리 사항을 현지 확인하여 미비점은 시정조치</p> <p>- 정리과정중에서 미비된 사항은 완전 정비하고 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하는 한편 문제점이 있을때는 군수가 조정 하고, 공부 또는 서류를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p> <p>○ 정비사항 : 시행일 선일까지</p>

업 무 명	주 요 조 치 사 항
<p>⑤ 사무 인수·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속기주의를 원칙으로하여 신설되는 읍지역에 속하는 재산, 공공시설, 해권, 채무, 공법상의 미수금 등, 공복문서철, 기타 일체의 행정처분 등은 신설되는 읍이 승계함을 원칙 ○ 인계의 범위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및 재산 인계·인수의 범위와 한계는 지역적 구분에 의하여 정하며 지역구분으로 승계가 곤란한 경우는 군수가 조정 ○ 사무의 인수인계는 개청후 빠른시일에 완료하고 인수·인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 ○ 확인감사는 군수가 인계·인수 완료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문제점은 바로 시정조치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군수가 결정(화장장, 양묘장 등) ○ 인수·인계시한 : 시행일 전까지
<p>⑥ 공인조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는 읍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 등의 공인을 군공인조례규정에 따라 조각하여 시행일부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직인 · 계 인 · 세입징수권, 정리권, 문품관리권 등

업 무 명	주 요 조 치 사 항
⑦ 공고 및 주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대상 비치 ○ 공인신고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설가키부 : 주민등록인명부 정리 군 : 군보게재, 각시도 및 관제시각에 동보 ○ 읍면기 관련 가치법규 공포·시행과 동시 취기 및 관할구역등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민원처리와 생업에 기장이 없도록 조치 ○ 공고, 도보 및 군보게재는 물론 반상회 공지사항으로 주지하고 방송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하는 등 식각적으로 홍보
⑧ 개청식 행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청일 : ○ 내 용 : 기념식, 현판식, 경축행사 등 ○ 개청행사 : 간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되, 소요경비를 성금·찬조금등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념품 증정 등은 억제

※ 기타 준비요령은 「행정구역실부편람(2000년)」 책자 참조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정

제정이유

양주군 청사의 관내 이전으로 군청 소재지인 주내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주읍의 관할구역을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만송리, 삼송리, 고읍리등 9개, 법정리로 정함(안 제2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제1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3항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 주내면 읍 승격 및 명칭변경 승인요청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읍설치 승인서 1부